

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

제정	2011. 4. 15	조례 제1771호
일부개정	2012. 4. 5	조례 제1852호
일부개정	2014. 8. 14	조례 제200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4. 11. 18	조례 제2040호(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5. 11. 5	조례 제2130호(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5. 11. 5	조례 제2136호
일부개정	2018. 4. 25	조례 제2369호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19. 8. 2	조례 제2518호
일부개정	2019. 12. 20	조례 제2569호
일부개정	2020. 6. 19	조례 제2634호
일부개정	2020. 12. 22	조례 제2699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23. 9. 25	조례 제2999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생교육의 진흥) ①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·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·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3조(재원확보 및 지원)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

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1. 5, 2020. 6. 19>

1.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지원사업
2. 장애인·다문화·노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
3. 지역·마을·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
4. 학습정보와 교육강의 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
5.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
6.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
7.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·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
8. 평생교육 지원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사업
9.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

③ 시장은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1. 5>

1. 법 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
2.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경비

제2장 평생교육협의회

제4조(설치) 시민을 위한 평생 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광명시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
2.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

으로 구성한다.

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장,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,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, 광명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, 평생교육 전문가,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,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장 및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4. 8. 14, 2019. 12. 20, 2020. 12. 22, 2023. 9. 25>

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⑤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·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의장의 직무 등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해촉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퇴할 때
2.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
4.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제10조(회의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

1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

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의회의원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장 평생교육진흥계획 등

제12조(평생교육진흥계획)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평생교육 실태 조사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3조(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) ① 시장은 지역현실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올바른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3년마다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내용은 주민의 참여 정도, 시설의 요구, 평생교육 내용 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.

제4장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설치·운영

제14조(설치) ① 시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평생학습원(이하 “평생학습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시장은 시 소유 건축물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 공공교육시설 및 사설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위치) 평생학습원은 광명시 오리로 762(하안동)에 둔다. <개정 2019. 12. 20>

제16조(업무 등) 평생학습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8. 4. 25, 2019. 12. 20>

1.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
2.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

3.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평생교육강사 등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관리 및 연수
5.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6. 평생학습 축제, 소식지 발간 및 특화사업 추진
7. 자율적인 학습동아리의 조직과 지원
8.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
9.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
10.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

11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7조(운영) 평생학습원은 시장이 관리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·운영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4. 25>

제18조(평생교육사)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원에 「평생교육법」 제24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.

제19조(수강신청) ① 평생학습원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강신청서를 평생학습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삭제 <2014. 11. 18>

[제목개정 2014. 11. 18]

제20조(수강료 징수)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시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4. 11. 18>

제21조(수강료 환불)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환불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평생학습원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
2.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

- 3. 수강등록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수강료 환불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.

제22조(시설의 사용 등) ① 시장은 평생학습원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4. 5, 개정 2019. 12. 20>

- 1. 시청·광명교육지원청,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
- 2. 광명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·단체(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한 기관·단체에 한함)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. 다만, 강당, 전시설은 별표 2 사용료의 50%를 징수한다.
- 3. 순수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동아리(학습원에 등록된 동아리에 한함)의 교육 또는 행사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학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(변경)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2. 4. 5, 2019. 12. 20>

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20>

- 1. 시설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- 2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4.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
- 5.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⑤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20>

[제목개정 2019. 12. 20]

제23조 삭제 <2019. 12. 20>

제24조(강사료 지급기준) ① 강사료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교육의 특성과 해당 분야 전공, 전문지식 요구 정도에 따른 경력에 따라 평가 책정한다.

② 평생학습을 위한 과목 또는 내용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와 강의 목적에 따른 강사료 적용을 위한 강의구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.

1. 일반강의(일반교양, 상식, 취미, 여가, 기초과정 등)
2. 숙달된 기능, 해당분야 전공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강의.
3. 전문과정 이수 및 자격취득을 위한 강의.
4. 전문분야의 지명도가 높은 강사에 의한 공개 교양강좌.
5. 그 밖에 평생교육의 개념에 따라 기획, 개발되는 프로그램

③ 강사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5조(평생학습 동아리 육성) ① 시장은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습동아리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평생학습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2. 4. 5]

제26조 삭제 <2018. 4. 25>

제5장 보칙

제27조(평생학습센터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동별 혹은 권역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4. 25>

[전문개정 2015. 11. 5]

제28조(포상 등)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,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

입상한 사람에게 포상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4. 25, 2019. 12. 20>

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·단체·학습동아리 및 개인 등에게 「광명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20>

[제목개정 2019. 12. 20]

제29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4. 25>

제3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4. 25>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광명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부칙 <2012. 4. 5 조례 제185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8. 14 조례 제2005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㉞ 까지 생략

㉟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평생학습사업소장”을 “평생교육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㊱ 부터 ㊴ 까지 생략

부칙 <2014. 11. 18 조례 제2040호,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1. 5 조례 제2130호,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

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1. 5 조례 제213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4. 25 조례 제236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9. 8. 2 조례 제251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12. 20 조례 제256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6. 19 조례 제263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12. 22 조례 제2699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평생교육사업소장”을 “평생학습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23. 9. 25 조례 제2999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⑬ 까지 생략

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평생학습사업소장”을 “평생학습사업본부장”으로 한다.

⑮ 부터 ⑱ 까지 생략

[별표 1] <개정 2019. 12. 20>

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·환불 기준(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 관련)

1. 수강료 기준

정규 교육 누적 시간	수강료
5시간 이하	5,000원
6시간 ~ 10시간	10,000원
11시간 ~ 20시간	20,000원
21시간 ~ 30시간	30,000원
31시간 ~ 40시간	40,000원
41시간 ~ 60시간	50,000원
61시간 ~ 80시간	60,000원
81시간 이상	70,000원

※ 정규과정 외의 교육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함

※ 교재비, 재료비는 별도 부담

2. 수강료 면제 기준

구 분	내 용
면제 대상	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)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) 3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) 65세 이상의 노인 5)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6) 북한이탈주민, 외국인 노동자·이주자 7) 한부모 가정(차상위 계층)

3. 수강료 환불기준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가. 학습비 징수 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	1)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3)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	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4)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
	나. 학습비 징수 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1)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수업시작 이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<p>비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학습비 징수기간”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 2. “총수업시간”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 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			

[별표 2] <개정 2019. 12. 20>

시설 등 사용료(제22조제2항 관련)

1. 시설사용료

(단위: 원)

구 분		기준	금액	사 용 기 준
강당		1회(2시간)	50,000	○ 1시간 이상 초과시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%를 가산한다.
전시실		1일	30,000	
강의실		1회(2시간)	20,000	
기타시설	면적기준 49㎡ 이하	1회(2시간)	10,000	○ 휴일,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20%를 가산한다.
	면적기준 50㎡ 이상	1회(2시간)	20,000	

2. 냉·난방 사용료

(단위: 원)

구 분	기준	금 액	비 고
강당 전시실	1회(2시간)	30,000	○ 사용자의 선택 신청 시 부과 ○ 매시간 초과시 30% 가산
그 외 시설	1회(2시간)	15,000	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19. 12. 20>

접수번호	평생학습원 시설 사용(변경)허가 신청서			
사 용 자	성명(단체)		생년월일	
	주 소		전화번호	
사 용 목 적			참석인원	명
사 용 기 간	년 월 일 시 ~ 시까지(일)			
사 용 시 설	시 설 명			
	부대설비			
사 용 료	납부대상		감면대상	
감 면 사 유				
첨 부 서 류				
<p>「광명시 평생교육진흥조례」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 신청인 (인 또는 서명)</p> <p>광명시 평생학습원장 귀하</p>				

접수번호	평생학습원 시설 사용(변경)허가서			
사 용 자	성명(단체)		주 소	
사 용 기 간	년 월 일 시 ~ 시까지(일)			
사 용 시 설 명				
사 용 료	원정			
허 가 조 건	이면과 같음			
<p>위와 같이 사용을 (변경) 허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광명시평생학습원장</p>				

(앞)

허 가 조 건

가. 시설 내에 병류 및 캔류의 음료수 반입을 금지한다.

나. 평생학습원은 “금연건물”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.

다.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(변상)하여야 한다.

라.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, 부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마.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소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한다.

바. 사용자는 「광명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및 시행규칙」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.

(뒤)

[별지 제2호 서식] <개정 2019. 8. 2>

접 수 번 호	교 육 수 강 신 청 서				
수강신청과목					
성명 [남/여]		생년월일		전화번호	
주 소					
모집우선순위					
본인은 귀 원에서 실시하는 상기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인 또는 서명)</p> 광명시평생학습원장 귀하					
본 교육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)					

접 수 번 호	교 육 수 강 신 청 서 접 수 증			
수강신청과목	성명 [남/여]	생 년 월 일		
주 소				
위와 같이 교육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광명시 평생학습원장				

[별지 제3호 서식] 삭제 <2014. 11. 18>